

의 정 정 보

2008 - 2 2. 12.

1. 최근 선거법 관련 질의·회신 자료	1
2. 최근 주요 제·개정 법령	23
3. 최근 타 시도 제정조례	32
4. 최근 중앙정부의 지방 관련 동향	44
〈부록〉 : 행복한 책임기	66

최근 선거법 관련 질의·회신 자료

① 「공직선거법」 제67조의 현수막 게시장소 사용비용

《질 의》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중 당해 선거구안의 읍·면·동마다 1매씩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 게시비용과 관련한 문의입니다.

현수막을 게시하고자 하는 고정시설물이 도로변 가로수나 가로등이 아니라 타인소유 건물의 부속시설물입니다. 그래서 건물소유주에게 선거운동기간 중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사용료”를 요구하였습니다.

1. 이 경우 후보자가 「공직선거법」 제67조 현수막을 게시하기 위하여 해당 건물의 소유주와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2. 만약 관계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면 실제 사용료를 지불하고 회계처리를 할 때 선거비용에 합산해야 하는지요?
3. 만약 선거비용에 합산해야 한다면 현수막 게시비용으로 보아 보전대상이 되는지요? (2008. 1. 2. 고용국 질의)

《답 변》

귀문의 경우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장소가 없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통상적인 거래가격의 범위안에서 정당한 사용료를 지급하고 게시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며, 그 비용은 보전대상이 되는 선거비용에 해당됨. (2008. 1. 1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② 경력이 게재된 국회의원 명함의 배부

《질 의》

귀 기관의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국회의원 명함 크기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를 드리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현직 국회의원이 명함에 경력과 약력을 기재하여 사용·배포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이 규정하고 있는 5cm × 9cm 규격보다 큰 명함(예, 7cm × 10cm)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는지 여부.

※ 명함은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표식이 없이 단순히 국회의원이라는 직함을 알리기 위한 명함임. (2008. 1. 14. 국회의원 최재성 질의)

《답 변》

귀문의 경우 국회의원인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의 규정에 따른 명함에 자신의 경력·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말함)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국회의원의 통상적인 업무용 명함에 경력 또는 학력을 게재하여 이를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것은 그 명함의 규격과 관계없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전하는 행위에 해당될 것이므로 행위 시기에 따라 같은 법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2008. 1. 2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③ 사면 및 복권시 당원자격 당연회복

《질 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귀 위원회의 발전과 귀하의 건승하심을 기원드립니다. 사면·복권에 따른 자격회복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정당 대표로서 판결에 의해 자격상실 되었으나 이번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을 받음으로써 별다른 절차(입·복당)없이 당원으로서 자격이 부여되는지 여부
2. 당적을 옮길 경우 자격 상실 이전의 당에서 절차(탈당·입당)를 밟아야 하는지 여부
3. 기타 지위 회복에 관한 법률적 참고 사항 등 (2008. 1. 2. (재)동서협력재단 질의)

《답 변》

귀문의 경우 정당의 당원인 자가 국회의원 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어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원의 자격이 상실되는 것이므로, 이후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게 되어 정당의 당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라 입당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임. (2008. 1. 1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4 선거구 외의 지역방송 광고출연

《질 의》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광고제작, 광고대행을 주 업무로 하는 풀굿 미디어 대표감독 차덕선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질의가 있어 우리위원회의 의견과 함께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 광고에 출연하는 자는 국회의원선거(2008. 4. 9. 실시)에 있어 현재 인천광역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음
- 출연한 방송광고물(경남 함양군 소재 지방업체의 광고물- 공원묘역)은 현재 대구, 경남 일부 지역의 지역 케이블 TV를 통해 방송되고 있음
- 인천광역시에 출마예정인 자가 인근지역이 아닌 대구지역과 경상남도 일부지역의 지역케이블TV 광고에 출연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의 효과로 볼

수 있는지, 또한 이렇게 선거운동의 효과와는 상관없는 먼 원거리 지역에서 국한하여 방송광고를 실시하는 행위도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행위인지 《우리 위원회의 의견》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 이하 같음)가 선거구민과 연고가 없는 지역을 주된 방송 권역으로 하는 지역케이블 TV에 귀문과 같은 단순한 상품광고에 모델로 출연하는 것만으로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2008. 1. 9.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질의)

《답 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후보자를 포함함)가 귀문과 같이 방송광고에 출연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93조제2항에 위반될 것임. (2008. 1. 16.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5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설날 위문품 제공

《질 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08. 4. 9. 실시되는 국회의원선거 및 「공직선거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궁금한 사항이 있어 법규해석을 의뢰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조속한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의왕시가 자체예산편성과 격려계획을 수립하여 의왕시 관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전 세대(약 600세대)에 설날(2008. 2. 7.) 전에 20,000원 ~ 30,000원 상당의 위문품 또는 위문금을 전달하여 위문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참고로, 2003년부터 위와 같이 위문품 또는 위문금을 전달하여 위문하고 있습니다. 2007년 설, 추석에 세대별(약 600세대) 25,000원을 수급자 계좌로 입금하여 위문하였습니다. (2008. 1. 15. 의왕시장 질의)

《답 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설날을 맞아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 다목에 해당되어 무방할 것임. (2008. 1. 2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6 천자문을 게재한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등

《질 의》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홍보물과 관련하여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1. 저희 선거사무소에서는 이번에 제작하게 되는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실용천자문을 표기하여 예비후보자 홍보물이 구독 후 최대한 헛되이 파쇄되지 않고 각 유권자들에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제작 하였습니다. 실제로 선거 때 발송되는 책자형 선거홍보물들이 쉽게 버려지는 것이 현실인 지금, 좀 더 실용적이고 유권자들의 일상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담아내고자 전면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 필요한 사항을 후면에는 천자문을 넣었습니다 (아래 예비후보자 홍보물 예시 참조). 천자문의 예비후보자 홍보물 삽입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2.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각 유권자가 기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안 하기 위해서 책자형 홍보물의 크기를 넓게 펼친 형태(아래 예비후보자 홍보물 예시 참조)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표지가 되는 두 면의 경우 기본적인 크기에 맞추어 제작(길이면과 너비면을 각각 접어서 작성)했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봉투에서 꺼내어 볼 경우 기존의 크기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렇게 제작할 경우 선거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도 누릴 수 있어 예비후보자들에게 금전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실제 견적을 받아본 결과 책자형으로 인쇄하여 만들었을 경우 170만원의 경비가 소요되는 것에 비해 낱장으로 인쇄할 경우 48만원이 소요됩니다. 책자형 인쇄물을 제작할 경우 약 세배가 넘는 경비가 드는 셈입니다. 이렇듯 예비후보자가 금전적

부담도 줄일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예비후보자 홍보물 내용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러한 제작 형태가 「공직선거법」상 가능한지 답변 바랍니다.

《답 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의 규정에 따른 예비후보자 홍보물에는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 외에 귀문과 같이 한자를 배우게 할 용도로 천자문을 게재하여서는 아니 될 것임.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예비후보자 홍보물의 규격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5조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30조의 규정중 책자형 선거공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귀문과 같이 길이면과 너비면을 각각 접어서 작성하는 등 책자형 형태를 벗어난 방법으로 작성할 수 없을 것임. (2008. 1. 2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7] 타방송사에서 제작한 방송연설의 방영 등

《질 의》

업무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공직선거법」 중 후보자의 방송연설(「공직선거법」 제71조)과 방송광고(「공직선거법」 제70조)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공직선거법」 제71조제4항에 의하면 방송연설에 있어서 “후보자 또는 연설원이 연설하는 모습외의 다른 내용이 방영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후보자 또는 연설원이 방송연설을 녹화하여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방송시설을 이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7조의2 방송연설에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1. 후보자가 방송연설을 하는 과정에서 가사가 없는 배경음악에 연설내용을 이르는바, 랩송(리듬에 맞춰 말하듯이 부르는 노래) 형태로 연설을 하면서 배경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2. 아울러 후보자의 연설모습이 없는 가운데 그 연설의 전 내용을 모두 자막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3. 후보자가 평생 막일로 고생해서 군살이 박힌 자기의 손을 보여주고 싶다고 손만을 클로즈업(Close Up)해 비춰달라고 요청할 경우 그 요청에 따라 방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4. 후보자가 「공직선거법」 제71조제1항 제3호의 텔레비전 방송을 통한 연설을 1분 동안만 해달라고 요청할 경우 그 요청에 따라 방송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5. 후보자가 이미 다른 방송사(MBC)에서 제작해 방송됐던 방송연설을 우리 방송사(KBS)에서 다시 방송해달라고 요청하거나, 방송연설을 다른 방송사(MBC)의 방송시설로 생방송으로 제작하면서 이를 우리 방송사(KBS)에서 생방송으로 송출만 할 것을 요청할 경우 그 요청에 따라 방송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6. 후보자가 방송연설을 외부 프로덕션의 중계차로 생방송으로 제작하여 이를 우리 방송사(KBS)에서 생방송으로 송출만 할 것을 요청할 경우 그 요청에 따라 방송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7. 「공직선거법」 제70조제1항에 “방송광고시간은 1회 1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광고시간을 5초로 제작하여 방송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2007. 12. 26. 한국방송공사 사장 질의)

《답 변》

1. 문 1·3·5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연설하는 모습 없이 자막만을 방영하여서는 아니될 것임.

3. 문 4·7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70조제3항 또는 제71조제7항·제10항에 따라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그 방송광고 또는 방송연설의 일시·소요시간 등을 사전에 통보·신청·신고한 경우에는 무방할 것임.

4. 문 6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른 방송연설은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무선국 또는 종합유선방송국(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 포함)이 제작하여 방송하여야 할 것이므로 귀문과 같이 외부 업체가 제작한 후보자 또는 연설원의 연설내용을 방송할 수 없을 것임. (2008. 1. 1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자료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www.nec.go.kr/>]

8 설·대보름 관련 정치관계법위반사례

1. 설 인사 등 명목의 선물 또는 금품·음식물 제공행위

가. 의례적인 행위

할 수 있는 사례

- 설날을 맞이하여 친척·은사를 방문하는 때 의례적인 선물을 하는 행위
-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지방자치법」 제6장 제3절과 제4절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과 그 밖의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이에 준하는 기관·단체·시설의 직원 제외)이나 소속 또는 차 하급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에게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선물을 당해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 정당의 대표자가 당해 당부에서 근무하는 유급사무직원에게 의례적인 설날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 ※ 중앙당이나 시·도당의 대표자가 아닌 국회의원이 정당의 당직자 등에게 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불가
- 친목회·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 읍·면·동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각급 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 안에서 상장(부상을 제외함)을 수여하는 행위
 - ※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 신청개시일(제18대 총선의 경우 '07. 12. 11)부터 선거일('08. 4. 9)까지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직접 수여하는 행위 제외
- 종교인이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성당·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물품 제공 포함)하는 행위

-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 또는 국회의원이 관할구역안의 지역을 방문하는 때에 함께 다니는 자에게 7,000원 이하의 식사류의 음식물(온천장·관광지 또는 유흥시설을 갖춘 장소 등에서 하는 음식물을 포함한 접대를 제외)을 제공하는 행위

※ 「함께 다니는 자」의 범위 및 인원

- 범 위 : 선거사무관계자, 정당의 간부, 보좌관 등 수행원을 모두 포함하되, 가족은 그 수에서 제외함.
- 인 원 : 국회의원,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 10인 이내

할 수 없는 사례

- 설날인사 등을 빙자하여 선거구민에게 선물 등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정당의 대표자·당원협의회장 등이 당해 당부에서 근무하는 유급사무직원이 아닌 통·리와 자연부락의 남·여책임자급 또는 청년책임자급 등 당직자들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민속경기대회 등 세시풍속행사, 시민위안잔치, 경로잔치, 주민단합대회 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을 제공하거나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향우회·종친회·동창회·산악회 등 각종 친목단체나 아미용협회 등 직능단체, 계모임 기타 사교단체 또는 그 구성원에게 금품·음식물, 선심관광 등을 제공하는 행위
- 경로당 등을 방문하여 설날선물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 자신이 거주하는 이웃이나 부모가 다니는 경로당이라 하더라도 금품·음식물을 제공이 금지되므로 구호·자선물품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내 구호·자선단체를 통하여 전달하도록 안내

나. 구호적·자선적 행위

선거법은 불우시설 등에 대한 의연금품 제공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빙자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

할 수 있는 사례

-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보호시설 중 고아원 등 수용보호 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 경로당, 노인회관, 기타 유료양로시설 등은 제외
- 「장애인복지법」 제48조(장애인복지시설)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 제외)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자선·구호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의 공공기관·법인을 통하여 소년·소녀가장과 후원인으로 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온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구호·자선단체가 개최하는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국가유공자, 무의탁노인, 결식자, 이재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을 돕기 위한 후원회 등의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 다만, 물품(포장지는 제외)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명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 제외
-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언론기관·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기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누가 주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행위 제외

할 수 없는 사례

- 불우이웃돕기·위문활동 등을 빙자하여 선거구민에게 설날선물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민(연고가 있는 자 포함)을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역·대합실 등에서 다과 등을 제공하는 행위
- 정치인팬클럽이 일반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팬클럽의 명의를 밝혀 불우이웃돕기 바자회 등을 개최하는 행위
- 정치인팬클럽이 불우이웃돕기, 위문활동 등을 빙자하여 해당 정치인을 위하여 일반선거구민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다. 직무상·업무상 행위

할 수 있는 사례

- 지방자치단체가 문화관광부가 시달한 「지역 진흥시책 기본 지침」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무료영화를 상영하거나, 무료음악회를 개최하는 행위
 - ※ 다만, 공직선거법 제86조제3항에 따른 제한기간에는 직전 2년간의 평균 실시횟수에서 1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됨.
-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주민체육대회나 전래적인 고유축제 또는 문화관광부의 「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의 범위 안에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지역문화제·지역민속축제·생태자연축제’ 등을 개최하는 행위
- 구호사업 또는 자선사업을 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당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를 나타내어 행하는 구호·자선행위
 - ※ 입후보예정자의 직명이나 성명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됨.
-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국가기관이 효자효부·모범시민·유공자 등에게 포상을 하거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안의 환경미화원·구두미화원·가두신문판매원·우편집배원 등에게 위문품을 제공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당에 전기료·난방비 등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거나, 보건복지부의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연초 사업계획에 의하여 경로당 이용에 부수되는 간이 취사용 쌀·부식비 등을 지급하거나, 설날 등 특별한 계기를 맞아 과일·음료수 등을 의례적으로 제공하는 행위와 여가 활동에 필요한 텔레비전이나 간단한 건강기구 등 기본적인 비품을 제공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장 명의로 제공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은 금지됨.

할 수 없는 사례

- 국회의원·정당의 대표자가 국회 또는 정당의 당사를 방문하는 선거구민에게 기념품·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각급기관·단체·회사 등이 주관하는 각종행사 등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입후보예정자의 직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거나 그가 주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라. 통상적인 정당 활동 관련 행위

할 수 있는 사례

- 정당의 대표자가 개최하는 정당의 정책개발을 위한 간담회·토론회에 참석한 직능·사회단체의 대표자, 토론자 등에게 정당의 경비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정당의 대표자가 개최하는 정당의 각종행사에서 모범·우수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상장과 통상적인 부상을 수여하는 행위
- 정당이 그 명의로 재해구호, 장애인돕기, 농촌일손돕기 등 대민자원봉사활동을 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당원협의회장 등 입후보예정자가 설날인사 등을 빙자하여 당원 등에게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 「공직선거법」 제140조(창당대회등의 개최와 고지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당대회 등과 제141조(당원집회의 제한)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원집회시 음식물과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 당원단합 등을 명목으로 단합대회·수련대회 등 당원집회를 개최하면서 참석자에게 식사선물·기념품·참석대가 등을 제공하는 행위

2. 설 인사 명목의 지지선전 등 사전선거운동

할 수 있는 사례

- 설날인사·귀향인사를 위하여 정당·기관·단체·시설이 그 명의(정당의 경우 그 대표자명을 포함)를 표시한 현수막 등을 당해 사무소 건물에 게시하는 행위
-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자에게 전화(문자메시지 포함), E-mail 등을 통하여 의례적인 설날인사를 하는 행위
 - ※ 평소 친교가 없는 선거구민이나 당원들에게 문자메시지·E-mail 등을 발송하는 행위는 불가. 다만, 예비후보자가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기타의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는 가능
-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와 그의 배우자(배우자 대신 예비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가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명함을 직접 주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 ※ 예비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명함은 줄 수 있으나 지지 호소는 불가
 - ※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명함이란 예비후보자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말함)·경력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cm 너비 5cm 이내의 명함을 말함(§60의3①2.).

할 수 없는 사례

- 설날인사 등을 명목으로 정당입후보예정자의 직명·성명이 게재된 현수막·벽보 등을 거리에 게시·침부하거나 연하장 등 인사장을 평소 친교가 없는 선거구민에게 발송하는 행위
- 설날인사 등을 명목으로 방송·신문·잡지 기타 간행물 등에 입후보예정자 등의 성명·사진·경력 등을 광고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가 아닌 입후보예정자가 설날인사 등을 명목으로 선거구민의 모임을 계속적으로 찾아다니며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나 입후보예정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 방문하는 행위
- 각종 단체·모임 등에 참석하여 자기 또는 특정인의 입후보 예정사실을 알리며 지지를 호소하거나 선전하는 행위
- 여론조사를 빙자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거나 특정인에게 편향되는 등 불공정한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
- 팬클럽 회원이 입후보예정자인 특정 정치인의 명의를 추정할 수 있는 명함을 일반선거구민과 수교시 교부·배부하는 행위
- 기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일체의 행위

9 정당의 독거노인 연탄배달 봉사활동 등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당의 대표 및 지도부, 당직자가 설 명절을 앞두고 대민봉사를 계획함에 있어 선거법 저촉 여부에 대한 해석을 아래와 같이 의뢰하오니 이의 취지를 살피시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대통합민주신당은 설날을 맞이하여 독거노인들에게 연탄을 배달하는 자원봉사를 진행하려 합니다. 자원봉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본부(이하 “연나운”이라 함)에 대통합민주신당은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일정금액을 기부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여부

2. 기부된 금액의 일부분 혹은 전액의 연탄을 연나운에게서 공급받아 연나운이 지정하는 지역의 독거노인들에게 배달하는 자원봉사를 당 지도부 및 당직자 40여명이 진행하려 하는데 가능한지 여부

위 사항에 대하여 선거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는지 해석과 답신을 부탁드립니다.

(2008. 1. 31. 대통합민주신당 사무총장 질의)

【 답 】 문1·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구호·자선사업을 하는 단체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3호 마목에 따라 무방할 것임. 다만,

귀문과 같이 독거노인들에게 연탄을 배달함에 있어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누가 주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될 것임.

(2008. 2.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10 정당의 자원봉사활동시 교통편의 및 식사제공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최근 태안 기름유출 사고로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실제 많은 국민들이 태안 기름제거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각 정당에서도 이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에서 당원이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기름제거 자원봉사활동을 할 경우 그 실비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일반국민 대상

가. 정당에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태안 이외의 지역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태안으로 이동할 경우 그 버스 대여료 또는 운임을 정당이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위의 자원봉사자들에게 정당에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2. 당원 대상

가. 당원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태안으로 이동할 경우 정당에서 그 버스 대여료 또는 운임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위의 당원자원봉사자들에게 정당에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2008. 1. 22. 대통합민주신당 한반도전략연구원 김현국 질의)

【 답 】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정당이 자원봉사자인 선거구민에게 교통편의·식사 등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4조에 위반될 것임.

2. 문 2에 대하여

정당이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일환으로 재해구호를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하기 위하여 귀문과 같이 소속 당원에게 교통이 불편한 장소로의 이동에 필요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자원봉사활동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으로 보아 무방할 것이나 식사 등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4조에 위반될 것임.

(2008. 1. 3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11 특수주간신문의 입후보예정자 취재·보도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본지는 기독교계 주간신문으로서 오는 7월 창간 9주년을 맞는 본지는 기독교정신의 전파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제18대 국회의원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신문의 기사에 관한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하고자 하니 신속하게 답을 해주시면 신문제작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지는 창간 이래 기독교인들의 삶과 철학을 성도인 독자들에게 알리고자, 모범이 되는 목회자와 성도(기독교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포함한 일상생활

에 대한 인터뷰 기사를 실어오고 있습니다. 선거철을 맞아 일상적으로 해오던 개인 성직자와 성도들에 대한 인터뷰 기사를 당해 신문에 게재하는 것이 가능한지 답변바랍니다.

※ 미션 21 소개

본지(제호 : 미션21)는 「신문 등의 자유과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1999년 7월 2일 등록)한 특수주간신문으로서 선교사업, 전도현장, 목회 및 목양활동, 친교현장 등을 문서선교를 통한 지역복음화와 이에 해당하는 각종정보와 교계 동정을 게재하여 선교활동에 기여함을 그 발행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지는 교인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보급됩니다.

(2008. 1. 23. 미션21 대표이사 박현주 질의)

【 답 】 귀문의 경우 특수주간신문이 「공직선거법」 제82조제1항에서의 “대담”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 이하 같음)인 성직자 등과 인터뷰한 내용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보도하거나,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전 60일부터 같은 법조에 따라 후보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보도하는 경우에는 무방할 것임. 이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선거일전 60일전에 금지되는 대담은 1인의 후보자 또는 대담자가 언론기관의 초청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사회자 또는 질문자를 만나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사회자 또는 질문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을 말함.

(2008. 1. 3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12 공천 탈락자의 당적변경 및 입후보 제한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본인은 한나라당 제18대 국회의원 후보 공천과정을 거쳐 금번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 하려고 합니다.

본인이 당헌·당규에 따라 한나라당의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신청을 하면서 ‘한나라당 공천신청 서약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본인이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한나라당 공천신청 서약서’를 함께 제출한 경우에도 한나라당을 탈당하여 다른 정당의 당원이 되거나, 당해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바랍니다.

□ 질의사항

1. 본인이 한나라당 지역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 심사에서 탈락되는 경우 한나라당을 탈당하여 다른 정당의 당원이 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2. 본인이 한나라당 지역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 심사에서 탈락되는 경우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 후보자로 등록될 수 있는지 여부

□ 한나라당 공천신청 서약서의 내용

본인은 제18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의 당 추천에 있어 당의 결정에 절대 승복함은 물론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굳게 서약합니다.

- 일체의 신청 제반서류는 본인이 작성하였으며, 당의 결정과정과 그 결과에 대하여 절대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공직후보자 추천 심사에서 탈락되더라도 당적 이탈·변경 등 일체의 해당행위를 하지 않는다.
- 당내경선 후보자로서 당해 선거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는다.

(2008. 2. 1. 김성일 질의)

【 답 】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정당법」상 제한되지 아니함.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덧붙임 질의회답(2005. 12.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을 참조하기 바람.

(2008. 2.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덧붙임】

입후보가 제한되는 당내경선의 범위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귀 위원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제2항에 당내경선은 ‘당내경선의 후보자로 등재된 자를 대상으로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 당헌 제88조(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의 추천)제2항 및 제91조(기타 공직후보자의 추천)제4항은 ‘공천심사위원회는 서류심사 및 여론조사를 거쳐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를 통하여 공직자후보를 심사하되,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는 공천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여론조사, 면접, 후보간 토론회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선거법상 규정하고 있는 여론조사 외에 당헌상 규정하고 있는 면접 또는 후보간 토론회 등의 방법으로 공직선거후보자를 선출한 경우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가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 11. 30. 한나라당 사무총장 질의)

【 답 】 「공직선거법」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의 규정에 따라 입후보가 제한되는 ‘당내경선’은 정당이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2이상의 경선후보자를 대상으로 당해 정당의 당헌·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자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는 방법(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함)에 한정되는 바, 귀문의 면접 또는 후보자간 토론회 등의 방법은 위의 ‘당내경선’으로 볼 수 없으므로 후보자로 등록될 수 있을 것이며, 같은 법 제52조(등록무효)의 규정에 따른 등록무효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임.

(2005. 12.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자료출처 :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http://cn.election.go.kr/>]

최근 주요 제·개정 법령

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0533호, 2008. 01. 08. 공포]

1. 개정이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634호, 2007. 8. 3. 공포, 2008. 2. 4. 시행)되어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열람제도가 강화되고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시설이 확대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열람제도 운영의 실효성 강화
(안 제10조, 제11조,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 (1) 현재의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열람제도에는 성범죄자의 사진규격, 직장 등이 명시되지 아니하고,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과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과 같은 중요한 정보가 표기되지 않는 등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열람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이 어려움.
- (2)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열람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등록·열람의 대상이 되는 신상정보를 성명·나이·주소 및 직업별로 그 내용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규정함.
- (3) 등록대상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부모와 청소년 관련 시설 및 교육기관의 장은 명확하고 구체적인 성범죄자 등록정보를 열람할 수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나.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대한 교육의 위탁 등(안 제18조)

- (1) 등록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청소년지원시설이나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의 보호시설이나 상담시설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이러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감축할 수 있도록 함.

- (2) 등록대상자에 대한 재범방지 교육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강화하여 등록대상자의 재범방지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다. 해임 및 폐쇄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등 마련(안 제21조)

- (1) 취업제한대상자에 대한 해임요구 및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대한 폐쇄요구 시 취업제한대상자와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청소년위원회는 2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통지하도록 함.
- (2) 해임요구 및 폐쇄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행정청의 불합리한 처분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0535호, 2008. 01. 08. 공포】

1. 개정이유

세분되지 아니한 관리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관리지역의 조속한 세분을 유도하기 위하여 미세분 관리지역의 건축제한을 강화하고, 관리지역 중 개발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에 소규모 공장설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도시계획시설인 자동차정류장에 공동차고지를 포함시킴(안 제2조).
-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단체가 설치하는 공동차고지를 도시계획시설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여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음.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단체인 협회 또는 연합회가 설치하는 공동차고지를 도시계획시설 중 교통시설에 포함시킴.

(3) 도심 내 화물자동차의 주차문제를 해소하고, 도로에의 불법 주차로 인한 도시미관의 훼손과 교통사고 발생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함.

나. 계획관리지역 내 소규모 공장설립 규제의 완화(안 제57조제1항 및 안 별표 20 제1호)

(1) 종전에는 계획관리지역 내에 1만 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공장설립의 허용 여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대부분 정하지 아니하고, 또한 공장을 설립하려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 공장설립이 어려웠음.

(2) 계획관리지역 내에 공장설립을 일반적으로 허용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를 생략하도록 하여 공장설립 절차를 간소화함.

(3) 개발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 내에 소규모 공장의 설립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활동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꾀함.

다. 민간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요건의 완화(안 제96조)

종전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민간이 시행하려는 경우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로워 민간참여가 저조하였으나, 앞으로는 민간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동의요건을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로 완화함.

라. 미세분 관리지역에 대한 건축제한 강화(안 대통령령 제17816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13조)

(1)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지역을 세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원 등으로 인하여 적극적으로 관리지역을 세분하지 아니하고, 관리지역에 대하여 개발가능용도인 계획관리지역의 건축제한을 적용하고 있어 난개발의 소지가 있음.

(2) 세분되지 아니한 관리지역에 대하여 관리지역 중 건축규제가 가장 강한 보전관리지역의 건축제한을 적용하도록 함.

(3) 세분되지 아니한 관리지역에 대하여 건축제한을 강화함으로써 미세분 관리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속한 관리지역의 세분을 유도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국토관리체계를 조기에 구축함.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17816호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건설교통부령 제601호, 2008. 01. 14. 공포]

1. 개정이유

여가수요의 증가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여가시설을 확대하고, 종합운동장의 유휴공간에 일부 수익시설을 설치할 있도록 하며, 골프장 내에 일반음식점의 설치절차를 간소화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원지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여가시설의 확대(안 제58조)

- (1) 국민여가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여가시설을 확대하기 위하여 유원지 안에 자연휴양림, 수목원 및 승마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2) 유원지 안에 자연휴양림, 수목원 및 승마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가를 즐기려는 국민수요를 충족시키고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 시키도록 함.

나. 종합운동장의 유휴공간에 일부 수익시설의 설치허용(안 제93조)

- (1) 종전에는 종합운동장에 수익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관중석 하부공간 또는 지하에만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시설이용이 불편하고, 수익이 낮아 재정지원이라는 입법취지를 살리지 못하여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 (2)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 100만 제곱미터 미만인 종합운동장의 경우 공연장, 예식장, 회의장, 미술관, 과학관 등 수익시설을 운동장의 유휴공간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3) 종합운동장의 유휴공간에 일부 수익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 유휴공간을 적절히 활용하고, 운영수익을 개선함으로써 운동장 이용자의 편의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됨.

다. 골프장 내 일반음식점 설치절차의 간소화(안 제101조제1항)

종전에는 골프장 안에 일반음식점을 설치하려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설치할 수 있도록 함.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노인복지부령 제437호, 2008. 01. 28. 공포]

1. 제정이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노인복지시설의 무료·실비 및 유료 구분을 없애고,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노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8608호, 2007. 8. 3. 공포, 2008. 2. 4., 2008. 4. 4., 2008. 8. 4. 시행)됨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입소비용을 정하고 입소대상자 등 관련 규정을 이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요양보호사의 등급 및 교육과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노인복지시설의 입소비용 등(안 제15조의2, 제19조의2 및 제27조의2 신설)

- (1) 법률에서 노인복지시설의 유료·실비 및 무료의 구분을 없애고 통합·개편하면서 노인복지시설의 입소비용을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또는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의 노인요양시설 입소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고,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한 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하도록 함.
- (3) 노인복지시설의 입소비용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노인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 및 노인복지시설 이용노인의 권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요양보호사의 등급 및 교육과정(안 제29조의2 및 별표 10의2)

- (1) 법률에서 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 등의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의 등급 및 교육과정을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 (2) 요양보호사는 1급 및 2급으로 구분하고, 1급 요양보호사 양성과정의 교육시간은 240시간, 2급 요양보호사양성과정의 교육시간은 120시간으로 정하며, 요양보호서비스 관련 이론 강의, 실기연습 및 현장실습을 받도록 함.
- (3) 요양보호사를 전문적으로 양성하도록 함으로써 노인 등에게 보다 전문적인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노인복지시설의 직원배치기준 강화(안 별표 2, 별표 4 및 별표 9)

- (1)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면 입소대상자가 중증의 노인성질환자로 전환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직원배치기준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2)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요양보호사를 두도록 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요양보호사실, 의료 및 간호사실, 물리(작업) 치료실 등을 설치하며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및 요양보호사를 두도록 함.
- (3) 노인복지시설의 인력배치 및 시설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행에 대비하고 보다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3조,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 별표 7부터 별표 10까지 및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 별표 10의2 및 별표 10의3의 개정규정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⑤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573호, 2008. 01. 31. 공포]

1. 제정이유

매년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재해위험지구와 상습침수지역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하여 민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8585호, 2007. 8. 3. 공포, 2008. 2. 4. 시행)됨에 따라,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의 지정 요건을 정하는 등 이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해위험 개선사업의 시행을 위한 민간자본의 유치(안 제9조)

(1) 지방자치단체나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방재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기관이 다른 법인 또는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재해위험 개선사업을 위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방재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기관이 설립되는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49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

(2) 민간자본을 재해위험 개선사업에 참여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사업을 주도적으로 시행하도록 함으로서 재해위험 개선사업의 민간투자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됨.

나.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등의 절차(안 제18조부터 제27조까지)

(1)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를 재해위험 개선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 토지 면적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발행 시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에서 보증하도록 하는 등 토지상환채권 발행에 관한 요건·절차 등을 정함.

(2)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요건·절차 등을 상세하게 정함으로써 토지상환채권으로 토지 등의 매각대금을 받는 자가 예상할 수 없는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것으로 기대됨.

다. 사업시행자가 선수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안 제28조)

(1) 재해위험 개선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을 공급

받으려는 자로부터 선수금을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재해위험 개선 사업 시행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 토지면적 50퍼센트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관련 토지·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저당권을 말소하여야 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고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함.

- (2)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만 사업시행자가 선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사업시행자의 파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됨.

라. 재해위험 개선사업에 따른 민영주택의 특별 분양(안 제29조)

- (1)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 안의 이주대상자와 교육기관의 교원 또는 종사자,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의 종사자에게 민영주택을 특별공급 할 수 있도록 함.
- (2) 재해위험 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이전부터 사업지구 안에 거주하던 주민과 그 지역에 설립된 교육기관·공공기관 등의 종사자에게 민영주택을 특별공급 함으로서 그 지역의 주민 등에게 개발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자료출처 : 법제처, <http://www.moleg.go.kr/>]

최근 타시·도 제정조례

1 부산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의 편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277
------	-----

제출년월일 : 2008. 01. 11.

제 출 자 : 부산광역시장
(소방본부장)

1. 제안이유

여름철 물놀이 장소에서의 물놀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부산광역시119시민수상구조대의 편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소방본부장은 해마다 119시민수상구조대의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소방서장은 수상구조대의 편성·운영에 따른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2조).
- 나. 소방본부장은 모집·선발한 119시민수상구조대원을 물놀이 장소를 관할하는 소방서별로 적정하게 인원을 배정하고, 소방서장은 일반구조대를 포함하여 수상구조대를 편성하고 수상구조대원을 배치하도록 함(안 제3조).
- 다. 수상구조대원의 자격기준을 정함(안 제4조).
 - 수난구조요원: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자격을 취득한 자, 수상구조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등
 - 수변안전요원: 시민단체회원, 대학생, 의용소방대원, 건강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주민 등

라. 소방본부장은 수상구조대에 갖추어야 할 장비를 정함(안 제5조).

○ 인명구조선, 구명보트, 구명튜브 등 수상구조장비

○ 응급처치용 구급장비 및 구급약품 등

마. 수상구조대의 운영기간 및 운영시간을 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 운영기간: 물놀이 장소의 개장기간

○ 운영시간: 물놀이 장소의 개장시간

바. 수상구조대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부상 또는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수난구조법」 제7조를 준용하며, 교통비·식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소방기본법 시행령」, 「수난구조법」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예산담당관 및 해양항만과장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입법예고(2007. 10. 24 ~ 11. 13) 결과, 불입

부산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의 편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민간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부산광역시119시민수상구조대의 편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름철 물놀이 장소에서의 물놀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계획) 부산광역시소방본부장(이하 “소방본부장”이라 한다)은 해마다 5월말까지 부산광역시119시민수상구조대원(이하 “수상구조대원”이라 한다)의 모집·선발·근무방법 등을 포함하여 부산광역시119시민수상구조대(이하 “수상구조대”라 한다)의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한 후 소방서장 및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소방서장은 수상구조대의 편성·운영에 따른 세부운영계획을 6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수상구조대의 편성) ① 소방본부장은 제2조의 종합운영계획에 따라 모집·선발한 수상구조대원을 「연안관리법」 제2조에 따른 연안(해수욕장을 포함한다) 및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른 해수면 또는 내수면으로서 구청장·군수가 지정하는 물놀이 장소(이하 “물놀이 장소”라 한다)를 관할하는 소방서별로 적정하게 인원을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상구조대원의 배치장소는 물놀이 장소를 관할하는 구청장·군수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상구조대원을 배정받은 소방서장은 제2조의 세부운영계획에 따라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구조대를 포함하여 수상구조대를 편성하고, 물놀이 장소에 수상구조대원을 배치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수상구조대원의 자격기준) 제3조에 따른 수상구조대원은 익수자 구조를 주요 임무로 하는 수난구조요원과 수변안전을 주요 임무로 하는 수변안전요원으로 구분하며, 그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난구조요원

- 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자격을 취득한 자
- 나. 수상구조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다. 대학에서 수상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과목을 이수한 자
- 라. 그 밖에 수상구조 능력이 있는 자

2. 수변안전요원

- 가. 시민단체회원
- 나. 대학생
- 다. 의용소방대원
- 라. 건강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주민

제5조(수상구조대의 장비) 소방본부장은 수상구조대에 다음 각 호의 수상구조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1. 인명구조선, 구명보트, 구명튜브 등 수상구조장비
- 2. 응급처치용 구급장비 및 구급약품
- 3. 순찰용 장비
- 4. 그 밖에 수상구조대원의 보호장비

제6조(수상구조대의 운영기간) 수상구조대의 운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물놀이 장소의 여건을 고려하여 그 운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1. 해수욕장: 개장기간
- 2. 그 밖의 물놀이 장소: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7조(수상구조대의 운영시간) 수상구조대의 운영시간은 물놀이 장소의 개장시간으로 한다. 다만, 물놀이 장소의 여건을 고려하여 그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수상구조대의 임무) 수상구조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수상 및 수중 인명구조
2.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및 미아보호
3. 수난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및 순찰
4. 그 밖에 물놀이 안전에 관한 사항

제9조(수상구조대원의 복제 등) 소방본부장은 수상구조대원에게 인명구조·응급처치 등 임무수행에 필요한 복제 및 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지도·감독)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수상구조대원의 근무상황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1조(수상구조대원의 근무중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수상구조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무를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1. 수상구조대의 명예를 뚜렷이 손상시킨 경우
2. 감독공무원의 근무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3. 그 밖에 수상구조대원으로서 근무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수상구조대원의 교육·훈련) 소방본부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수상구조대원을 배치하기 전에 인명구조·응급처치 등 임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 (수상구조대원의 보호)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수상구조대원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상구조대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보험의 종류와 내용은 소방본부장이 정한다.

③ 수상구조대원이 물놀이 안전활동 중 부상 또는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수난구호법」 제7조를 준용한다.

제14조(관계기관과의 협조 등)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수상구조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물놀이 장소를 관할하는 구청장·군수 및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교통비 등 실비지급) 부산광역시장은 수상구조대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식비 등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포상) 부산광역시장은 물놀이 안전 활동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수상구조대원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료출처 : 부산광역시의회, <http://www.council.busan.kr/>]

2 경기도 평택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404
----------	-----

제출연월일 : 2008년 2월 일

제 출 자 : 경기도지사

1. 제정이유

- 평택항 등 평택시의 우수한 지리적 환경을 바탕으로, 21세기 환황해권 경제시대에 대비한 수도권 국제화 중심도시 건설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6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경기도 평택국제화 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 평택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를 설치함.(안 제4조)
- 나. 지방채는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도지사의 명의로 발행하며, 이 경우 일반회계 또는 그 밖의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음.(안 제8조)
- 다.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다른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거나 대행할 수 있음.(안 제12조)

3. 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가. 「지방자치법」 제126조

나.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5조, 제12조, 제13조

6. 예산수반사항

- 예산규모 : 1,860억원
-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활용

7. 입법예고 결과

- 가. 입법예고기간 : 2007년 12월 3일 ~ 12월 24일(21일간)
- 나. 의견내용 : 의견 없음

8. 부서협의 결과

- 가. 감사관(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 나. 정책기획심의관(규제개혁위원회) : 비대상

경기도 평택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6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평택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 평택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경기도 평택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평택시 서정동·고덕면 일원에 조성되는 평택국제화계획지구 내 택지개발사업으로 한다.

제3조(관리자의 지정) 이 조례의 공기업을 적정하게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의 공무원 1명을 관리자로 둔다.

제4조(특별회계의 설치)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경기도 평택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수입으로 지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세입·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지방채, 차입금, 수입금 등으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 일반관리비, 그 밖의 경비로 한다.

제6조(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7조(출자) ① 제5조의 각 회계는 이 사업에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자를 받은 경우에는 이익의 상황에 따라 전년도 이익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출자한 회계에 납부할 수 있다.

제8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에 의한 지방채는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도지사의 명의로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회계 또는 그 밖의 특별회계는 지방채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처리 상황의 제출) 관리자가 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도지사에게 제출할 경우에는 예산집행보고서, 자금운용보고서 등 회계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잉여금의 처분)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익금은 그 전연도의 사업연도로부터 이월한 결손금을 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처분한다.

1. 법 제37조에 의한 이익적립금
2. 상환되지 아니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상환액의 감채적립금
3. 제7조에 따라 출자한 회계에 대한 납부금
4. 미처분 이익잉여금

제11조(변상책임) 법 제48조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2조(사업의 위탁)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다른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거나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3조(일반회계의 적용) 이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실·과		평택개발지원단
입 안 자	실·과장직위 성 명	평택개발지원단장 최 원 용
	담당·팀장직위 성 명	평화도시개발담당 이 재 영
	담 당 자 성명(전화)	지방시설주사보 차상훈(249-2538)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126조 (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1. 수도사업(간이상수도사업을 제외한다)
2. 공업용수도사업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4. 자동차운송사업
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에 한한다)
6. 하수도사업
7. 주택사업
8. 토지개발사업
9. <삭제>

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1.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3.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을 제외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동항 각호 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5조 (지방직영기업의 설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직영기업을 설치·경영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설치·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제12조 (권한의 위임등) ① 관리자가 사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직영기업에 종사하는 상위서열의 공무원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② 관리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당해 지방직영기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다른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다른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에게 위탁할 때에는 미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 (특별회계)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마다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동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2 이상 경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 1인을 두는 경우에는 그 2 이상의 사업에 의료사업에 있어서는 병원마다 하나의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자료출처 : 경기도의회, <http://www.ggc.go.kr>]

최근 중앙정부의 지방 관련 동향

① 매력있고 살기좋은 섬 창출을 위한 10개년 계획 시동

－ 『제3차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계획(351개 도서, 2조 5,208억원)』 확정 －

-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에서는 351개 도서에 2조 5,208억원 규모의 『제3차 도서종합개발 10개년(‘08~’17) 계획』을 도서개발심의위원회 심의(‘07.12) 및 총리보고를 거쳐 1. 7(월) 최종 확정하였다.
- 도서개발촉진법(‘86. 12. 제정)에 의거 추진되는 도서종합개발사업은 행자부, 해수부, 건교부 등 7개 부처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서지역의 생활 및 생산기반, 문화·복지기반시설 등의 조성을 통하여 도서주민의 소득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이다.
- 1988년부터 10개년 단위로 추진된 도서종합개발사업은 ‘07년도에 제2차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계획(‘98년~’07년)이 마무리됨에 따라 ‘08년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제3차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 ※ 일본은 이도진흥정책을 1953년부터 제6차 10개년 계획(‘04~’13) 추진중
- 행정자치부는 제3차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을 정립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연구용역 실시(‘06. 12), 제2차 도서개발 10개년 계획 실적평가(‘07. 3), 도서지역주민 설문조사(‘07. 3. 19~3. 23) 전문가 및 관련부처 및 지방공무원 연찬회(‘07. 3. 29~3. 30) 등을 실시하였다.

<제3차 도서종합개발계획의 목표와 기본방향>



- 제3차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계획은 「매력 있고 살기 좋은 섬」 창출을 목표로 하였으며, 목표 실현을 위한 세 가지 기본방향으로
 - 도서의 여건과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는 「**유형화·특성화 종합계획**», 관계부처간 협력으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는 「**협력적 계획**», 도서주민과 함께하는 「**참여계획**」으로 정하였다.
- 제3차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계획의 주요특징은
 - 도서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소규모 분산투자로 추진되던 종래의 사업방식을 지양하고, 도서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유형화·특성화** 계획방식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 도서 낙후성의 근본적 원인인 격절성(隔絶性)해소에 가장 효과적 수단이며, 도서주민의 최대숙원사업인 **연육연도교 사업**을 안정적으로 **확대·추진**하고자 하였다.
- 제3차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계획은 351개 개발대상도서에 1,407건, 2조 5,208억원이 투자될 계획이다.
 - 이중 관계부처(문화·농림·보건·환경·해수·건교부, 산림청 등 7개 부처)의 투자계획은 733,387백만원이며, 행정자치부는 1,109건에 1조 7,78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 행정자치부의 투자내역을 살펴보면,
 - 연육·연도교 사업 : 10개소(계속 2, 신규8), 4,129억원
 - 유형화·특성화 종합계획 : 260건, 8,907억원
 - 생활·생활·소득기반시설 : 849건, 4,744억원
- 향후, 행정자치부는 관계부처 실무자 및 도서관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평가반**을 구성하여 사업간 연계추진여부, 중복투자여부 등을 점검, 관련 부처간 협조를 바탕으로 도서개발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며,
- **도서진단제**도를 마련하여 도서의 특성과 문제를 진단, 도서지역에 적실성 있는 **맞춤형 정책**들을 개발할 계획이다.
- 도서종합개발사업은 지난 20년간('88~'07) 낙후된 도서지역에 생활 및 생산기반시설 등 기초인프라 시설의 확충·정비로 낙후성 해소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제3차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계획의 지속추진으로 도서주민의 실질적인 소득증대 및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 제18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전국 동시 주민등록 일제정리

- 정리기간(1.14~3.6), 과태료도 1/2까지 경감 -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08. 4. 9. 실시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를 대비하여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조사하여 국민들의 선거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08.1.14~3.6까지 53일동안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 중점 정리대상

- ▲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 및 거짓신고자 정리
- ▲ 여러가지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의 재등록
-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

사실조사는 전국 읍면동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 세대명부에 의하여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전세대 방문조사로 실시되며 무단전출자, 거짓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말소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주민등록이 말소된 취학대상 아동에게 의무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일제정리 기간 중에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함께 실시된다.

아울러, 일제정리기간동안 말소자, 신규증 미발급자 등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1/2까지 경감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일제정리 추진일정 】

- 일제정리 홍보 : '08. 1. 2 ~ 1.11
- 사실조사 실시 : 1.14 ~ 2.12
- 최고 또는 공고 : 2.13 ~ 3. 3
- 직권조치 및 정리 : 3. 4 ~ 3. 6

3 2007년도 지방행정혁신 우수기관 및 유공자 시상

- ◆ 최우수기관에 강원도, 전주시, 당진군, 영도구 수상
- ◆ 전주시 유금호 사무관 등 15명 훈·포장 등 수상
- ◆ 서울특별시 마포구“원클릭 도시정보 I-시스템”등 13개 지자체 혁신과제를 혁신명품으로 선정하고 인증서를 교부

□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1. 29(화), 15:00 정부중앙청사 국제회의장에서 지방행정혁신평가단, 지방자치단체장 등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도 지방행정혁신 우수기관(68개 기관) 및 혁신 유공자 15명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서 혁신사업 중 혁신성이 우수하고 사업성과가 탁월한 13개 과제를 혁신명품으로 선정하고 인증서를 교부했다.

□ 2007년도 지방행정혁신평가는

○ 지방행정 및 혁신평가 전문가 148명으로 구성된 『지방행정혁신 평가단』이 주관이 되어 246개 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 지난해 10~11월 2개월간에 걸쳐 혁신역량, 혁신과제, 혁신체감도 등 3개 부문에 대해 서면심사 및 현장 확인, 검증을 실시하였다.

○ 고객과 성과중심의 지방행정혁신을 선도한 총 68개 지방자치단체가 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 이날 시상식은

○ 최우수인 대통령표창에는

- 광역에서는 강원도가 기초(시·군·구)에서는 전북 전주시, 충남 당진군, 부산 영도구 등 4개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표창을 받았다.

○ 국무총리표창은 경상남도 등 10개 지방자치단체가

- (시도 : 1) 경상남도
 - (시 : 3) 충남 아산시, 전북 군산시, 전북 김제시
 - (군 : 3) 충북 증평군, 전남 영암군, 경남 함양군
 - (구 : 3) 서울 중랑구, 부산 동래구, 광주 서 구
- 선정되어 표창을 받았다.

○ 행정자치부장관표창은 충청북도 등 54개 지방자치단체에 수여했다.

○ 표창을 받는 68개 지방자치단체는 별도로 총 195억원의 재정인센티브가 지원했다.

- 대통령 표창 → 광역 15억원, 기초 8억원
 - 국무총리 표창 → 광역 9억원, 기초 5억원
 - 행정자치부장관 표창 → 광역 6억원, 기초 1.8억원
- (도약상 7개 기관은 광역 3억원, 기초 1억원)

□ 박명재 행정자치부장관은 참여정부 혁신성과와 지속적인 혁신을 강조하고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2007년도 지방행정혁신 수상기관 (68개 / 195억원 지원)

□ 대통령표창 : 4개 기관 (광역 1, 기초 3)

구 분	대상기관	지방자치단체	인센티브
광역	1	강원도	15억
기초 시	1	전북 전주시	8억
기초 군	1	충남 당진군	8억
기초 구	1	부산 영도구	8억

□ 국무총리표창 : 10개 기관 (광역 1, 기초 9)

구 분	대상기관	지방자치단체 (직제순)	인센티브
광역	1	경상남도	9억
기초 시	3	충남 아산시, 전북 군산시, 전북 김제시	각 5억
기초 군	3	충북 증평군, 전남 영암군, 경남 함양군	각 5억
기초 구	3	서울 중랑구, 부산 동래구, 광주 서 구	각 5억

□ 행정자치부장관표창 : 54개 기관 (광역 3, 기초 51) ※ 5단계 및 개선도 6 포함

구 분	대상기관	지방자치단체 (직제순)	인센티브
광역	3	충청북도, 경상북도	각 6억
		부산광역시 ※ 5단계	3억
기초 시	17	경기 의정부, 경기 양주시, 강원 동해시, 강원 태백시, 강원 속초시 충북 청주시, 충북 제천시, 충남 천안시, 충남 서산시, 충남 논산시 전남 목포시, 경북 김천시, 경북 구미시, 경남 사천시, 경남 양산시	각 1.8억
		경기 성남시, 전남 순천시 ※ 도약	각 1억
기초 군	17	경기 가평군, 강원 양구군, 충북 보은군, 충남 금산군, 충남 부여군 충남 서천군, 충남 태안군, 전북 장수군, 전남 함평군, 전남 장성군 전남 완도군, 경북 예천군, 경남 의령군, 경남 함안군, 경남 산청군	각 1.8억
		인천 강화군, 경북 영덕군 ※ 도약	각 1억
기초 구	17	서울 종로구, 서울 성동구, 서울 마포구, 서울 구로구, 서울 영등포 부산 서 구, 부산 동 구, 부산 부산진, 부산 해운대, 부산 연제구 광주 북 구, 광주 광산구, 대전 중 구, 대전 서 구, 대전 대덕구	각 1.8억
		대구 중 구, 광주 동 구 ※ 도약	각 1억

4 새로운 온천표시 올해 6월부터 시행

□ 온천뿐만 아니라, 목욕탕이나 숙박업소등에서도 구별 없이 사용되고 있는 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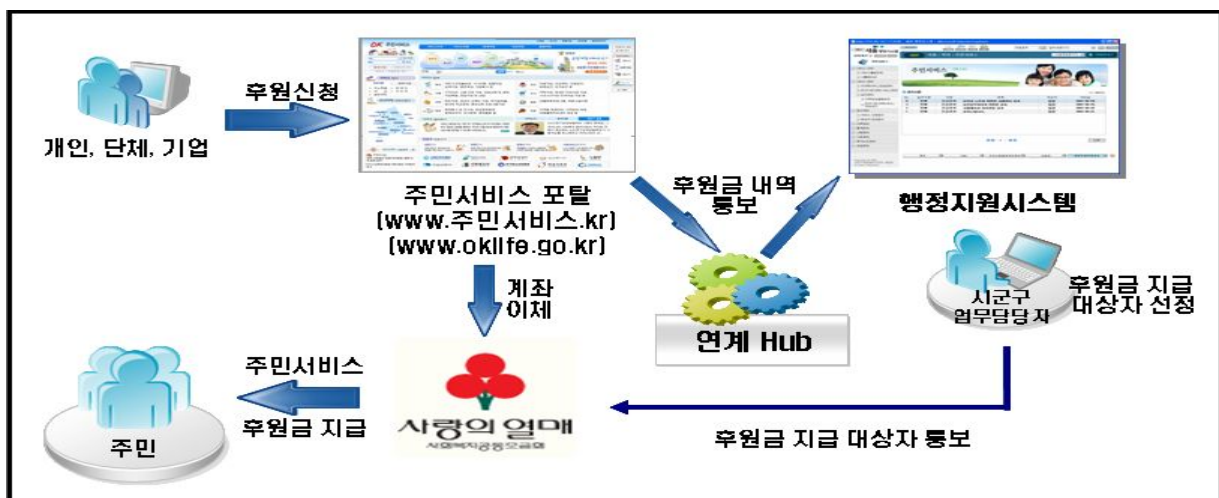
행 온천표시(♨)가 금년 6월부터는 새표시()로 바뀌게 된다.

- 현행 온천마크는 1981년 온천법이 제정되면서 공식적으로 사용하게 되었으나 온천표시가 일반목욕탕이나 숙박업소에서도 똑같이 사용됨에 따라, 온천법에 의해 허가 받은 온천장(현재 전국 477개 업소)을 구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 새로운 온천로고는 뜨거운 온천탕을 바탕으로 안에서 편안하게 온천을 즐기고 있는 가족, 사랑, 건강을 형상화 한 것으로서 앞으로는 로고만 보고도 온천인지 일반목욕탕인지 구별할 수 있게 되어 국민건강증진과 온천을 통한 관광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행정자치부(박명재 장관)는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등을 거쳐 새로운 온천로고를 금년 6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며, 금년 6월부터 온천이용허가를 받지 않은 업소에서 새로운 온천표시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온천표시를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할 경우에는 온천법 제32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⑤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후원업무

현재 전 시·군·구에서 처리되고 있는 후원업무의 신청창구 일원화 및 체계적 관리 등을 위한 정보화체계 필요

○ 후원업무 처리 흐름도



○ 시스템도입 전후 비교

구 분	도입 전	도입 후
후원신청	- 읍면동 직접방문 후원신청 - 후원금 직접 수령/접수한 후, 공동모금회 계좌로 입금처리 - 기부금 영수증 발급 - 후원금 현황 수시 요청 및 수령	- 기관을 직접방문하지 않고, 일원화 된 창구(포털)를 통해 후원신청 가능 - 후원금을 직접 수령하지 않고, 후원신청 정보만 시스템으로 입력 - 기부금 영수증 미발급 - 후원금 현황은 시스템으로 확인
	⇒ 인터넷을 통한 후원신청 창구 일원화, 관리절차 단순화 및 투명성 제고	
대상자 선정관리	- 후원대상 정보 및 내역의 문서관리 - 문서에 의한 후원대상자 추천	- 후원대상 정보의 시스템화 - 시스템을 통한 후원대상자 추천 및 관리
	⇒ 후원대상자 선정과정의 자동화 및 투명성 강화, 후원내역의 통합관리	

※ 후원 업무량 70% 경감 및 연간 10억원 예산절감 효과 기대

통합정보시스템(1단계) 서비스 제공 현황

서비스 종류	서비스 내용	사용대상	서비스 창구
서비스안내	◦8대 분야별, 대상자별, 생애주기별 안내 - 중앙부처 제공 서비스: 249종 - 지역자원서비스: 17만건	일반국민	대국민 포탈
서비스 신청	◦복지, 보건 관련 서비스 신청(20종) ※ 일부서비스는 상반기중 개통예정	일반국민	대국민 포탈
서비스 알아보기 (시뮬레이션)	◦서비스 79종 - 급여계산 : 15종 - 기본안내 : 29종 - 욕구별안내 : 35종	일반국민	대국민 포탈
독거노인관리	◦현황조사: 570,000건 ◦지원카드: 140,000건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시군구서비스관리자	대국민포탈 행정지원시스템
후원신청	◦포탈을 통한 후원신청	일반국민 시군구공무원	대국민포탈 행정지원시스템
대상자추천	◦긴급지원대상자 추천	일반국민 시군구공무원	대국민포탈 행정지원시스템
민관협업	◦민간시설서비스등록및관리 ◦민관 커뮤니티	민간시설종사자 시군구공무원	대국민포탈 행정지원시스템
상담정보 관리	◦상담이력관리 ◦신청정보관리	시군구공무원	행정지원시스템
긴급복지연계	◦129콜센터 연계를 통한 긴급복지 서비스 처리	시군구공무원	행정지원시스템
부가기능	◦생활마당, 통계관리 등	일반국민 시군구공무원	대국민포탈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기능 및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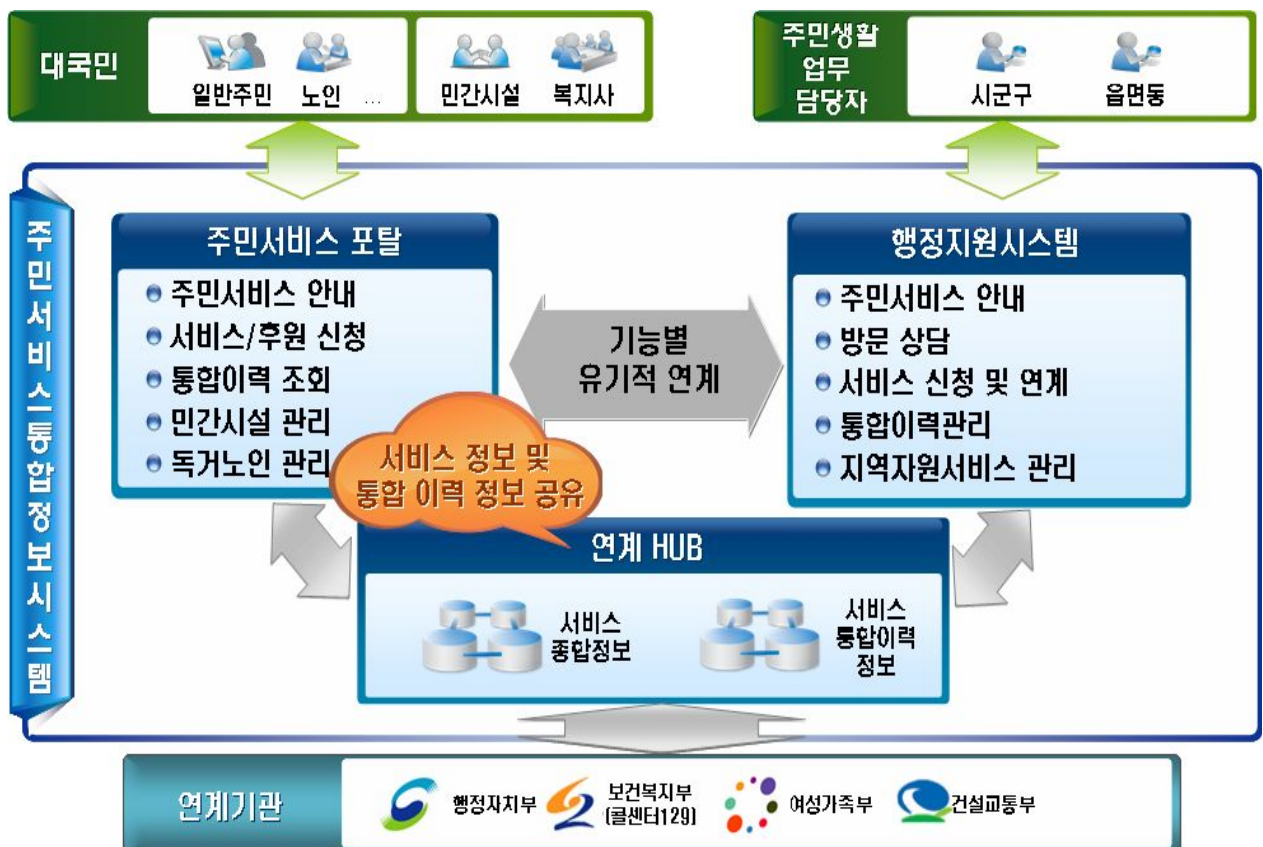
○ 통합정보시스템 기능 및 구성

- 통합정보시스템은 **대국민포털**과 **행정지원시스템**으로 구성

※ 일반주민이 사용하는 포털시스템은 주민생활서비스 종합정보조회, 서비스신청, 민간기관 서비스 정보 등록·관리 기능 등이 있으며, 통합서비스 상담등록 및 서비스 이력관리, 서비스 신청·접수처리 등 행정내부시스템으로 구성된 공무원 창구, 행정지원시스템이 있음

- 대국민포털과 행정지원시스템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통합서비스 제공기반 구축

○ 통합정보시스템 개념도



통합정보시스템 메인화면(포털 및 행정지원)

○ 주민서비스 포털(www.oklife.go.kr)

○ 주민생활 행정지원시스템

번호	제목	작성일자	조회수
7	영유아 보육료 온라인 서비스 신청업무 처리지침	2008-01-17	207
6	주민서비스 포털을 통한 온라인 신청대상 서비스 선정 시에 유의하세요.	2008-01-16	308
5	새행정정보시스템에서 긴급복지 건 처리 방법	2008-01-15	196
4	주민서비스 매뉴얼 배포	2008-01-07	548
3	지역자원 서비스 일괄등록 양식변경	2007-12-28	212
2	지역자원 서비스 일괄등록 관련	2007-12-21	340
1	주민생활 통합정보시스템 오픈 안내	2007-12-21	317

⑥ 리눅스·매킨토시도 전자민원G4C 이용 가능해진다

- 전자정부서비스 최초... 28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 신청 가능 -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통합 전자민원창구인 전자민원G4C(egov.go.kr)를 통해 리눅스, 매킨토시 등 비(非) 윈도 운영체제(OS) 사용자들도 주민등록 등·초본 신청 서비스를 1월 28일(월)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리눅스, 매킨토시 이용자들은 그동안 운영체제가 맞지 않아 전자민원G4C를 이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으려면 시간을 쪼개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의 PC를 통해 인터넷으로 전자민원G4C에 접속, 주민등록 등·초본을 신청하고 수령방법(우편)을 선택하면 3~4일 뒤 요청한 서류를 받을 수 있어 한층 편리해지게 된다.

아직은 윈도 운영체제가 설치된 PC처럼 실시간 발급서비스는 지원되지 않고, 최신 운영체제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등 다소 제약이 없지 않지만 행정자치부는 향후 관련 제도와 기술을 보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내에는 리눅스와 매킨토시에서도 주민등록 등·초본서류에 대한 실시간 발급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이용자 확대를 위해 오는 8월까지 대상민원을 토지(임야)대장 등 수요가 많은 민원사무 7종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리눅스와 매킨토시 사용자들의 공인인증서를 활용한 인터넷 민원신청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익스플로러 지원(윈도 운영체제 기반) 일변도인 국내 웹서비스 환경도 점진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윈도 운영체제의 네티즌이 전자민원G4C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민원안내 5,100여종, 민원신청 720여종, 민원발급 32종, 민원열람 25종, 부가서비스 3종 등이다.

리눅스 또는 매킨토시 운영체제가 설치된 PC에서 전자민원G4C 사용에 대한 문의 및 제안은 헬프데스크(02-2100-4040, g4c@egov.go.kr)로 하면 된다.

전자민원G4C PC 운영체제 지원 현황 ('08.1.28 기준)

운영체제	웹 브라우저	비고
윈도98, 윈도2000, 윈도2003, 윈도XP, 윈도비스타	인터넷 익스플로러 6, 7	32bit
	파이어폭스 1.5, 2.0	
리눅스 2.4, 2.6	파이어폭스 1.5, 2.0	32bit
매킨토시 OSX 10.4, 10.5	사파리 3.0	

7 2008 지방세법령 개정 시행

- 경차 및 농·림·어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재산세 분납대상 조정 등 서민 부담 경감 -

□ 행정자치부는 2008. 1. 1일자로 지방세법과 지방세법시행령을 개정 공포·시행한다.

□ 지방세법령 개정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서민 및 농·림·어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하여

○ 재산세 분납대상 세액을 1,000만원 초과에서 500만원 초과로 조정함

○ 비영업용 경형승용자동차의 감면기준 정비 및 경형상용차 취·등록세 감면 신설

- 2008. 1. 1부터 비영업용 경형승용자동차의 기준을 800cc에서 1,000cc로 상향조정하여 취·등록세를 전액 감면함으로써 세제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 경형승합차 및 경형화물차에 대하여 취·등록세를 50% 감면함으로써 서민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함

○ 종자생산용 토지 및 양식어업용 토지 등에 대하여 재산세 부담 경감

- 종자업자 소유의 시험·연구·실습 또는 종자생산용 토지, 농업회사 법인 소유의 농지(도시지역 제외), 양식어업용·종묘생산어업용 토지, 준보전 산지 내 시업중인 임야(도시지역 제외)에 대하여

- 재산세를 종합합산에서 별도합산으로 전환하여 농·림·어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함

2. 공익사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하여

○ 국민신탁법인(National Trust)에 대한 감면 신설

-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보전·관리 활동을 수행하는 국민신탁법인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등록세, 재산세 등을 면제함

○ 농촌 생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신설

- 한국농촌공사가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등록세 면제

○ 기업도시 내 외국교육기관의 교육목적 사업 부동산에 대하여 취·등록세 비과세 규정 신설

3. 공평과세 실현과 조세의 합리화를 위하여

○ 천재 등으로 인한 이재민의 대체취득 비과세 범위 확대

- 천재, 지변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 등을 대체취득하는 경우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개수하는 경우에만 취·등록세를 비과세하였으나,
- 앞으로는 승계취득 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대상에 포함함

○ 투기지역 내 뉴타운 등 주택재개발사업의 비과세대상 범위 축소

- 투기지역 내에서 주택재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환지계획 및 관리 처분계획 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대상의 범위를
- 현행 “사업시행인가일” 이전 부동산 소유자에서 “정비구역지정일” 이전 부동산 소유자로 변경함

○ 과점주주의 범위 조정

- 법인의 주식지분을 100분의 51이상 소유한 자에서 100분의 50을 초과 소유하는 자로 과점주주의 범위를 확대 조정함

○ 지방세 연구기관의 설립근거를 마련함으로써

- 지방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연구·지원으로 지방세의 정책품질을 높이며,
- 지방자치단체 간 세원불균형 완화, 자주재원 확충 등 산적인 정책과제의 추진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부부간 재산분할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비과세 신설

- 부부가 혼인 중 소유하게 된 재산은 사실상 부부 공동의 노력에 의해 취득한 재산에 해당되므로
- 이혼으로 인하여 부부간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시의 분할이나,

협약에 의한 분할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함으로써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도모함

○ 고급주택 판단기준에 주택가액 기준 추가

- 취득세와 재산세 중과대상인 고급주택의 기준에 종전의 면적 등
기준 이외에 주택가액이 6억원을 초과해야 하는 기준을 추가

○ 면허세 비과세 규정 보완

- 면허의 실질적인 사항이 변경되지 않는 단순 변경면허에 대하여
면허세를 비과세하고,
- 격오지에서 영업하는 약업사와 한약업사에 대한 면허세를 제3종
에서 제4종으로 변경하여 세부담을 완화함

○ 국민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의 지원을 위하여 체육시설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세제지원 등 세제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는 내용임

[자료출처 : 행정자치부, <http://www.mogaha.go.kr/>]

⑧ 국민 눈높이에 ‘딱’ 맞춘 법령사이트 오픈

- 법제처 2월 1일 「수요자 중심 법령정보시스템」 본격 운행 -

□ 법제처(처장 남기명)는 2월 1일부터 국민들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법령정보시스템인 「수요자 중심 법령정보시스템」을 본격 오픈하며, 당일 오후 1시 40분에 정부종합청사 15층 법제처 대회의실에서 개통식을 갖는다.

- 우선 2월 1일 ‘음식점 창업·운영 분야’와 ‘교통·운전 분야’에 대한 법령 정보 서비스를 시작하며, 뒤이어 2월 29일 ‘장애인 고용 분야’, ‘영유아 보육 분야’, ‘외국인 투자자 분야’ 등 3개 분야를 서비스 한다.

□ 「수요자 중심 법령정보시스템」 사업은 법제처가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실생활이나 생업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어려운 법령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풀어서 제공하는 새로운 법령정보 인프라 구축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작년 12월 12일 ‘수요자 중심 법령정보추진단’ 현판식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 이 사이트를 통해 일반 국민 누구나 무료로 교통·운전 분야 등 5개 분야와 관련한 “법령정보”와 “법령관련정보”, 그리고 “부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 “법령정보”는 주로 관심이 있는 분야에 관한 법령을 알기 쉽게 해설하여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정보이며,

법령조문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조문의 의미와 해설, 각종 법령 용어의 뜻, 각 법령들간의 복잡한 관계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도식화한 법령관계도, 그 밖에 각종 법령서식들이 여기에 포함됨.

- “법령관련정보”는 관심이 있는 분야의 법령과 관계되는 각종 유용한 정보를 말하며,

예컨대, 법령해석사례, 행정심판 재결례, 대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례, 관계 공무원과의 질의·응답사례, 그리고 각종 정책·통계 정보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 그 외에 “부가서비스”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이용자가 궁금해 하는 법령과 관련된 각급 기관으로의 링크, 이용자가 찾아본 정보의 히스토리를 기록해둔 “내가 찾은 법령정보”, 이용자가 특히 기억해두고 싶은 법령정보만을 따로 스크랩할 수 있는 “나의 정보노트”, 그 밖에 이메일 전송서비스가 여기에 포함된다.

□ 이용을 원하는 국민들은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수요자 중심 법령 정보시스템」명칭인 ‘원클릭 법령누리’를 치면 바로가기 주소가 뜨며 클릭하면 상세한 정보를 볼 수 있다.

- 그 외에 주소창에 <http://oneclick.moleg.go.kr>를 직접 치거나 혹은 법제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이용이 가능하다.

[원클릭 법령누리 초기화면]

주소(D) http://oneclick.moleg.go.kr/CSP/common/Main.laf

홈 | 사이트맵

법령누리안내 | 법령누리검색 | 부가서비스 | 열린공간

통합검색 [] 검색

주간 검색어 : 학교, 음식점, 식품, 위생, 도로교통법

원클릭 법령누리
수요자 중심시대!
어려움이 원하는 전문적인 법령 관련 정보를
수요자의 관점에서 한 눈에 알 수 있습니다.

음식점 | 교통 운전 | 장애인 (교통) | 영유아 (보육) | 외국인 투자자

공/지/사/항

수요자 분류표
★★★★★
수요자를 분야에 따라 체계적이고 입체적으로 분류 하였습니다.
바로가기

열린공간
질문과 답변
수요자중심
법령정보서비스 추진단
의견제출
수요자중심
법령정보서비스 추진단
담당부서
수요자중심
법령정보서비스 추진단
02)2100-2736~2737

내가 찾는 법령정보 MORE
· 음식점 (창업·운영)

[음식점 창업·운영분야 화면]

홈 | 사이트맵

법령누리안내 | 법령누리검색 | 부가서비스 | 열린공간

음식점 창업·운영

통합검색 [] 검색

주간 검색어 : 학교, 음식점, 식품, 위생, 도로교통법

음식점 창업·운영
수많은 법령 중 음식점 창업과 운영에 필요한 법령만을
별로 정리해서 알고 싶으십니까?
관심분야를 클릭하시면 윤사전영자가 사전에 알아야 할 법령과
법령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전 준비 | 영업 신고·허가 | 사업자 등록 | 종업원 관리 | 제한·준수 사항 | 행정제재 및 처벌 | 행정쟁송 | 기타사항

음식점 관련 법령관계도 바로가기

내가 찾는 법령정보
· 음식점 (창업·운영)
· 교통 · 운전

관련사이트
· 식품의약품안전청
· 식품의약품등용어집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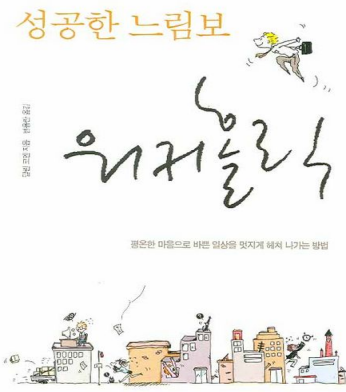
[교통·운전 분야 화면]



- 수요자 중심 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해 서민들의 높았던 법률문턱이 대폭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서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소한 법률문제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없더라도 스스로 찾아보고 해결할 수 있게 되었으며,
 - 궁극적으로는 법이 지배하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구현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앞으로 많은 국민들이 무료로 서비스는 되는 편리한 법령정보서비스인 「원클릭 법령누리」 시스템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언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자료출처 : 법제처, <http://www.moleg.go.kr/>]

부록 : 행복한 책 읽기

 성공한 느낌보 저자명 : 달린 코엔 출판사 : 산소리 출판년 : 2007년 페이지 : 213 가 격 : 10,000원	도서명 : 워커홀릭 저자명 : 달린 코엔 출판사 : 산소리 출판년 : 2007년 페이지 : 213 가 격 : 10,000원
---	--

워커홀릭들이 마음의 평정을 얻을 수 있는 법!

바쁘면서도 바쁘지 않을 수 있는 길!

너무 바빠서 잠시도 쉴 틈이 없는 워커홀릭들. 그렇다고 일을 그만둘 수도 없는 현실에서 이 책은 바쁨을 감당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마음이 바쁘지 않은 사람'이 되어 반복되는 일상에서도 의미 있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준다. 일을 천천히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느긋하게 가지면서도 일처리는 빨리 하여 성공하는 길을 열어준다.

저자는 변호사, 파트타이머, 소프트웨어 회사 직원, 수제화 회사 CEO, 대기업 경리부장, 금융회사 직원 등 수행을 따라 행한 워커홀릭 6명의 변화과정을 제시하며 정돈된 정신상태에서 주어진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한 삶의 기술을 재미있게 전달한다. 무엇보다 선불교에서 제시하는 수행 방법을 응용한 점이 독특하다.

그리고 동시에 포괄의 기술을 곁들여 '자유자재로 집중력의 범위를

좁히거나 넓히고, 또 자유롭게 몰입의 대상을 바꿀 수 있는 사고의 융통성'을 갖추기 위한 기본기를 제공한다. 가만히 앉아서 열까지 호흡하기, 음식 먹으며 명상하기 등 5가지 실천 연습을 제시한 다음, 각 연습과정마다 구체적으로 어떤 동작들을 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설명한다.

깨달음을 향해 선불교의 수행 방법을 선택하여 색다른 접근을 시도한 점이 돋보인다. 그렇다고 책이 종교적인 색채를 너무 크게 드러내지는 않았다. 옛 선인들의 지혜를 현대에 접목시켜 종교를 초월한 진리를 선사한다. 이를 통해 참선의 달인들이 지니고 있는 마음의 평온을 얻고 바쁜 일상 속에서도 스트레스 받지 않고 일할 수 있을 것이다

[자료출처 : 인터넷서점]